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불건전영업행위 등의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절차)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 제6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하 “갱신기간”이라 한다)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삭 제>
②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 설>	1. 금융관련법령
<신 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 설>

지의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신 설>

제102조의2(불건전영업 행위 등
의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
항제5호에서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
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신 설>

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
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
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신 설>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
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
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신 설>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
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

<신 설>

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2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유사투자자문
업자는 법 제101조 제6항에 따
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에도 계속해서 유사투자자문업
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효기
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하 “갱신기간”이라 한다)
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
고를 하여야 한다.